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보

제1212호 2019년 6월 7일(금)

고 시

○ 속초 도시관리계획(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 ····· 2

발행 : 기 획 예 산 담 당 관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고시 제2019-44호

속초 도시관리계획(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시 고시 제2019-32호(2019.5.9.)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(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6월 7일
속 초 시 장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구 역 명	위 치	면 적 (㎡)		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40	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-1번지 일원	-	증) 7,529	7,529	

▣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위 치	면 적(㎡)	결 정 사 유
신설	40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-1번지 일원	7,529	▫ 도시 기능·미관 및 환경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.

나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1)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계	7,529	-	7,529	100.0	
일반상업지역	7,529	-	7,529	100.0	

2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▣ 교통시설(도로) 총괄표

유 별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계	1	340	8,500							1	340	8,500
대로	1	340	8,500							1	340	8,500

▣ 교통시설(도로) 변경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3	2	25	주간선 도로	340	동명 450-1도	동명 259-3도	일반 도로		1974. 8. 14 (건고 제272호)	
변경	대로	3	2	25 ~ 29.5	주간선 도로	340	동명 450-1도	동명 259-3도	일반 도로			

▣ 교통시설(도로)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대로3-2	대로3-2	폭원변경 (25m → 25~29.5m)	◦ 공동주택단지 진·출입에 따른 수복탑교차로 도류화로 인한 면적 변경

▣ 공간시설(교통광장) 변경 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종류	위치	면 적(㎡)		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 경	40	광장	교통광장	동명동 81-1도 일원	3,124.0	증)124.0	3,248.0	1986.6.3. (건고제238호)

▣ 공간시설(교통광장) 변경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40	광 장	면적변경 (3,124.0㎡→3,248.0㎡)	◦ 공동주택단지 진·출입에 따른 수복탑교차로 도류화로 인한 차선확보 및 면적변경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가구 번호	획지 번호	획 지		비 고
				위 치	면적(㎡)	
1	40	BL1	A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-1번지 일원	7,250	공동주택
			B	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1-1번지 일원	279	공공시설

※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광장으로 기부채납 예정임.

4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표시 번 호	위치 (획지번호)	구 분		결 정 내 용
40	A	용도	허용	◦「주택법」에 의한 공동주택(연립주택) 및 부대복리시설
			불허	◦ 허용용도 외의 용도
		건 폐 율		◦ 80% 이하
		용 적 률		◦ 900% 이하
		높 이		◦ 43층 이하
		배 치		-
		형 태		-
		색 채		-
		건 축 선		◦ 건축한계선 6M

5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

도면번호	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40	BL1	◦ 단지내 조경 -「건축법」 및「속초시 건축조례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	
		◦ 차량진출입허용구간 -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- 차량진출입허용구간으로 결정된 부분 외에는 차량진출입 불허	
		◦ 주차장 설치기준 -「주차장법」 및「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	

2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 도면 : 실음생략